

의안번호	제 100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11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유재목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2년 10월 25일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
----------	-----

발의연월일 : 2022년 10월 25일
발의자 : 유재목, 오영탁,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1. 제안이유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지질공원에 대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지질공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업무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관이 우수하고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충청북도 내 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질(地質)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이나 기록을 말한다.
3. “지질공원해설사”란 지질공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질공원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 관리·운영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회복하도록 관리·운영하고,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을 오염 또는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지질공원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해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및 시·군의 담당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육성 및 보전사업
2.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지원사업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4. 지질공원의 홍보 및 관광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관리·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강화) 도지사는 지질공원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 등과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지 출장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시·도지사는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공청회와 관할 군수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1. 특별한 지구과학적 중요성, 희귀한 자연적 특성 및 우수한 경관적 가치를 가진 지역일 것
2. 지질과 관련된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 요인이 우수하여 보전의 가치가 높을 것
3. 지질유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은 이 법에서 환경부장관의 업무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을 인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질공원의 명칭, 구역, 면적, 인증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려면 먼저 제2항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 5. 29.> [본조신설 2011. 7. 28.]

제36조의5(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29.>

1. 지질유산의 조사
2. 지질공원 학술조사 및 연구
3. 지질공원 지식·정보의 보급
4. 지질공원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지질공원 관련 국제협력

5의2. 지질공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내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자연공원을 보존하고 국가지질공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관리 및 운영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 일원의 지질자원과 고유 인프라 등을 융합한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2. 비용발생 요인

- 세계지질공원 관리·운영
- 지질공원 조사, 학술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질공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질공원 해설사, 협의체 구성 등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지질공원 관리·운영 등)
-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지질공원에 대한 지원)
-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지질공원해설사의 활용 등)
-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협의체 구성·운영)
- 충청북도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재정지원), 제11조(수당과 여비)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20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사업내용
 - 국가지질공원 운영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지질공원 조사, 학술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질공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질공원 해설사, 협의체 구성 등 ※ 보조율 : 도비 100%

나. 추계 결과 : 1,149,500천원(국비 500,000, 도비 299,500, 군비 350,000천원)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계(천원)	1,149,500	200,000	200,000	264,500	220,500	264,500
국가지질공원 운영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지질유산 조사, 지질공원 프로그램 개발 등	100,000			50,000		50,000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6,000				6,000	
지질공원해설사 지원	39,000			13,000	13,000	13,000
협의회 개최 및 지급수당	4,500			1,500	1,500	1,500

※ 향후 5년간 11.5억원 수반될 예정이나 1개 사업*(10억원) 기추진 중으로, 1.5억원 신규 수반될 것으로 추계됨 * 단양국가지질공원 운영(국비사업)

다. 재원조달방안

- 국가지질공원 운영 :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지질공원 조사, 학술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질공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질공원 해설사, 협의체 구성 등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200,000	200,000	264,500	220,500	264,500	1,149,500
국가지질공원 운영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지질유산 조사, 지질 공원 프로그램 개발 등		-	-	50,000	-	50,000	100,000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6,000		6,000
지질공원해설사 지원				13,000	13,000	13,000	39,000
협의회 개최 및 지급 수당				1,500	1,500	1,500	4,500
재원 조달		200,000	200,000	264,500	220,500	264,500	1,149,500
의존 재원	소 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보조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교부세						
지방채							
도 비		30,000	30,000	94,500	50,500	94,500	299,500
특별회계							
구. 군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35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